

2025년도 문화유산위원회

**제9차 순천개분문화유산분과위원회 회의자료**

- 일 시 : 2025. 9. 23.(화) 14:00 ~
- 장 소 :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(대회의실)
- 출석위원: 김기수(위원장), 김상남, 김종현,  
김태일, 나창순, 이광표, 이상희,  
이혜은 (이상 8명)
-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: 이하 자료와 같음

**문 화 유 산 위 원 회**



## □ 고지사항

1. 「문화유산위원회 규정」 제10조에 따라,
  -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,
  -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,
  -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(법인의 상근·비상근 임직원 포함)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,
  -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,
  -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
  -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.
  -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문화유산위원회 규정」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.
2.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3. 아울러 「문화유산위원회 규정」 제9조 및 「문화유산위원회 운영지침」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4. 「문화유산위원회 운영지침」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#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제9차 회의 안건 목록

## 【심의사항】

1	사적 「구 군산세관 본관」 주변 국가등록문화유산 「군산 내항 호안시설」 현상변경 변경허가	(공 개)
2	사적 「대한성공회 강화성당」 주변 행위허가 -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미디어아트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조성	(공 개)
3	「김우진 희곡 친필원고」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심의	(공 개)
4	「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」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심의	(공 개)
5	예비문화유산 선정 소위원회 구성·운영(안) 심의	(공 개)

## 【검토사항】

6	「서유견문 필사 교정본」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	(공 개)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---

# 심 의 사 항

---

## 1. 사적 「구 군산세관 본관」 주변 국가등록문화유산 「군산 내항 호안시설」 현상변경 변경허가

### 가. 제안사항

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사적 「구 군산세관 본관」 주변에 친수공원을 조성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「군산 내항 호안시설」에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「구 군산세관 본관」 주변에 친수공원을 조성하고 「군산 내항 호안시설」에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유산 보존·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- 2021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(‘21.11.23.) : 조건부가결  
※ 허가조건 : 현지조사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고 국가유산청 승인 후 추진 ⇒ `22.7.27. 조건부 허가 통지

### 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

(2) 대상문화유산명

- 사적 「구 군산세관 본관」(제290호, '81.9.25. 지정)
  - 소재지 :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4-7
- 국가등록문화유산 「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」(제719호, '18.8.6. 등록)
  - 소재지 :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-4 등
- 국가등록문화유산 「군산 내항 호안시설」(제719-2호, '18.8.6. 등록)
  - 소재지 :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-4 등
- 국가등록문화유산 「군산 내항 철도」(제719-3호, '18.8.6. 등록)
  - 소재지 :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-70 등

(3) 세부내용

- 대상위치 : 전북 군산시 장미동 1번지 4호 일원
  - 허용기준 : 1구역(개별심의)
  - 이격거리 : 문화유산보호구역에 인접 ※ 당해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포함

○ 변경 내용 : 군산 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공사

구분		규모		비고	
		당초	변경(증감)		
침수방지시설	총구간		1,544m	1,544m	○ 변경없음
	A구간 (440m)	투명방호벽	421m	421m	○ 차수관→개폐식 방호문으로 변경(2개소) *스윙식1, 슬라이딩식1
		차수관	38m	16m(-22m)	
		개폐식방호문	0m	22m(+ 22m)	
	B구간 (252m)	투명방호벽	25m	30m(+ 5)	○ 차수관, 승강식방호문 →개폐식으로 변경(3개소) *슬라이딩식3
		차수관	48m	0m(-48)	
		승강식방호문	5m	0m(-5)	
		개폐식방호문	0m	37.3(+ 37.3)	
		방재언덕 구간 (마루높이增高)	252m	0m(-252)	○ 방재언덕(도로면增高) 공사 삭제
	C구간 (532m)	투명방호벽	551m	556m(+ 5)	○ 차수관→개폐식 방호문으로 변경(6개소) *스윙식4, 슬라이딩식2
		차수관	64m	30m(-34)	
		개폐식방호문	0m	29m(+ 29)	
	D구간 (320m)	투명방호벽	106m	106m	○ 변경없음
		계단식방호벽	180m	180m	
기타	B구간 호안석축 보수		14.5㎡	300㎡ (+ 285.5㎡)	○ 호안석축 보수 공사 추가(65m)
	B구간 친수공원 배수시설		-	D600흡관 2개소 매설	○ 우수배수관 추가

- 허가기간 : 2022.8.1.~2025.12.31.(변동없음)

라. 의결사항

○ 조건부 가결

- 석축 호안 해체 보수 및 문비 설치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
- 석축 보수 공사 전반에 대해 아카이빙할 것

○ 출석위원 8명 / 조건부 가결 8명

## 2. 사적 「대한성공회 강화성당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조성

### 가. 제안사항

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「대한성공회 강화성당」 미디어아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사적 「대한성공회 강화성당」에 강화군의 역사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사업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프로젝터 함체 등 미디어아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과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강화군수
- (2) 대상문화유산 : 사적 「대한성공회 강화성당」 (2001.1.4. 지정)
  - 소재지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창리 27번길 10
- (3) 세부내용
  - 미디어아트 조사(照射) 범위
    - 강화성당 건물 부분(약 160㎡), 담장 및 석축 부분(약 350㎡)
  - 기반시설
    - 설치위치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창리 405 용흥공공원(제1구역)
    - 설치내용

- 프로젝터 함체(3.1m\*3.1m\*5m(H)) 1개(함체內 프로젝터 3대)
- 수목투사 레이저 조명 25개
- 조명형 조형물 3개, 조명형 의자(스피커 내장) 8개
- 분전함 1개, 전선 매설을 위한 터파기(총길이 261m, 깊이 0.6m)

### 라. 의결사항

- 보류
  - 강화성당의 역사성 강화를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
  - 영상 시설물이 당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
- 출석위원 8명 / 보류 8명

### 3. 「김우진 희곡 친필원고(金祐鎭 戲曲 親筆原稿)」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

#### 가. 제안사항

목포시 소장 「김우진 희곡 친필원고(金祐鎭 戲曲 親筆原稿)」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제5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등록 검토('25.5.27.)를 거쳐 등록 예고한 목포시 소장 「김우진 희곡 친필원고(金祐鎭 戲曲 親筆原稿)」에 대하여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심의 하고자 하는 사항임
- 등록 검토 시 「김우진 친필원고」의 명칭을 「김우진 희곡 친필원고」로 부여 하도록 검토하였음

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: 목포시장
- (2) 대상문화유산

문화유산명칭	수량	규격(cm)	제작연대	소유자	소재지
김우진 희곡 친필원고 (金祐鎭 戲曲 親筆原稿)	4점	19.5×13.5 등	1925년~ 1926년	목포시	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95 (목포문학관)

- (3) 심의사항 :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
- (4) 추진경과
  - ('18.6.~'18.12.) : '근대문화유산 문학(육필)분야 목록화 조사' 연구용역 실시
  - ('24. 3. 8.) : 문화유산 등록 신청(목포시 → 국가유산청)
  - ('25. 2.24.) : 문화유산 등록 검토 조사 실시
  - ('25. 5. 27.) : 제5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'조건부 가결'
- (5) 등록예고 : '25.6.12.~'25.7.14.(32일간) \* 의견 없음

#### 라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출석위원 7명 / 원안가결 7명

#### 4. 「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관련 기록물」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

##### 가. 제안사항

(O)000000 소재 「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관련 기록물」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나. 제안사유

- 제2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등록 검토('25.2.25.)를 거쳐 등록 예고한 (O)000000 소재 「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관련 기록물」에 대하여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심의 하고자 하는 사항임
- 등록 검토 시 「태안 천리포수목원 민병갈 가옥 및 기록물」의 명칭을 「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관련 기록물」로 부여하도록 검토하였음

#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: (O)000000
- (2) 대상문화유산

문화유산명칭	수량	규격(cm)	제작 연대	소유자	소재지
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관련 기록물	2종 각 1식	18.5cm×13cm	1946년~1989년	0000 000000	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000

(3) 심의사항 :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

(4) 추진경과

- ('24. 3. 5.) :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(충청남도 → 국가유산청)
- ('24. 6.19.) :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현장 조사  
- 보완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 회신('24.10.15.)
- ('24.11.13.) :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보완 조사
- ('25. 2. 5.) :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추가 조사
- ('25. 2.25.) : 제2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'조건부 가결'
- ('25. 9.18.) :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대상 변경 요청(태안군→국가유산청)

(5) 등록예고 : '25.3.18.~'25.4.17.(30일간)

- (이의제기 / '25.3.29) 천리포수목원은 토종 식물 종자들을 밀반출한 곳('97년 KBS 일요스페셜에서 방송)이므로 등록 절차 철회 요청

- (의견서 / '25.4.17) 기록물 제작연대를 수목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서신을 제외한 1962~1989년으로 수정 요청

라. 의결사항

○ 보류

- '25. 9. 18. 접수된 등록 대상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 기록물에 대해 재조사 추진

○ 출석위원 7명 / 보류 7명

## 5. 예비문화유산 선정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

### 가. 제안사항

예비문화유산 선정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예비문화유산 법정사무가 신설됨('24.9.15.)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 다양화·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대안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.  
※ 「근현대문화유산법」 제44조제3항: 예비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.

### 다. 소위원회 구성·운영 방안

- (1) 위원구성: 분과위원회 동산분야 위원 2명 및 전문위원 2명을 비롯하여 5개 대분류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0명 내외로 구성- 상세내용 <붙임> 참조
- (2) 심의권한: 분과위원회로부터 심의 권한을 위임받아 예비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
  - 예비문화유산 선정 신청 기 접수 건과 '25.10월까지 접수 예정 건('25. 9. 12.(금))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건)에 한함
- (3) 향후계획: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소위원회(예비문화유산) 심의('25.11.11.(화) 예정)

#### < 관련 규정 >

##### ■ 문화유산위원회 규정

제8조(소위원회)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·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다.

##### ■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

제6조(소위원회 운영) ①「문화유산위원회 규정」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.

### 라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출석위원 7명 / 원안가결 7명

---

# 검 토 사 항

---

## 6. 「서유견문 필사 교정본」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

### 가. 제안사항

00000 소장 「서유견문 필사 교정본」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00000 소장 「서유견문 필사 교정본」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('24.5.29.)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('25.5.9.)를 실시하고,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가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.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00000
- (2) 대상문화유산

문화유산명칭(안)	수량	규격(cm)	제작연대	소유자	소재지
서유견문 필사 교정본	1건 9책	26.8×20	1889년~1895년 추정	00000	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000

- (3) 검토사항 :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
- (4) 추진경과
  - ('24. 5.29.) : 문화유산 등록 신청(서울시 → 국가유산청)
  - ('25. 5. 9.) : 문화유산 등록 검토 조사 실시

### 라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출석위원 7명 / 원안가결 7명